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6. 18 선고 2023가단4893 판결 [약정금 및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4. 5. 21.

판 결 선 고 2024. 6.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22. 7. 21. 원고에게 3,400만 원을 매달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2. 8. 31. 원고에게 25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만 원(=3,400만 원 -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는 아무런 이의신청 이유나 답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들은 그 이후에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 지예현